

의안번호	2200006
의 퇴 인	김석기의원
회 답 일	2024. 06. 27.
추계번호	24A039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위원회 운영,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7억 2,400만원, 2026년 4억 5,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1억 7,700만원(연평균 6억 3,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17조)	—	453	—	—	—	453	91
공론화위원회 운영(안 제18조)	2,524	—	—	—	—	2,524	505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안 제20조)	200	—	—	—	—	200	40
합 계	2,724	453	—	—	—	3,177	635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함.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2항)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함(제1항) ○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함(제2항)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함(제3항) － 1.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6항)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안 제15조(사무기구의 설치)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제1항) ○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2항)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의무규정
3	안 제18조(공론화 등)	○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음(제1항) ○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제2항) ○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함(제4항) ○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제5항) ○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7항) ○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함(제8항)	
4	안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 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과 안정성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개략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심부 지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이하 “기본조사 후보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함. 다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은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함(제1항)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함(제2항) ○ 제2항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6	안 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 위원회는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세부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표·심부 지질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함(제1항)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2항)	
7	안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제2항1)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또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제3항) －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위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3.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됨(제5항) ○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제6항) ○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8	안 제30조(지하연구 시설의 건설 등)	○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된 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위원회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에는 처분시설을 설계·건설하기 전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시설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실증하여야 함(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9	안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피·독성저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제2항) ○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	○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제2항)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재량규정
11	안 제37조(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 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 지원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합(제2항) - 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총 금액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 2. 지원금을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하는 금액(이하 “구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 3. 연도별 재원 규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원금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역별 지원금은 해당 구역의 면적, 인구 및 부지내저장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함(제3항)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구역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직접지원사업은 구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함(제4항)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5항) - 1. 주민직접지원사업 :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하는 사업 -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 4. 육성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 5. 그 밖에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006)
- 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	○ 안 제6조, 안 제8조 및 안 제15조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2항은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정부가 5년의 존속기한 이내에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제7항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제2항은 위원회 사무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15조(사무기구의 설치)		
2	안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	—
3	안 제18조(공론화 등)	○	—
4	안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	—
5	안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	○ 안 제21조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 및 안정성 등을 조사한 뒤(제1항)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제2항)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실시(제6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조사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6	안 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	○ 안 제22조는 안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의 평가를 위해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를 도출하고(제1항) 안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를 실시(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층조사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사례에서는 2개 부지에 대하여 약 3,000MSEK(환율 128원/SEK 기준 3,84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바 있음
7	안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	안 제24조는 안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으로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또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4조제7항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8	안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	- 안 제30조제1항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건설·운영을, 제30조제2항은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의 건설·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0조제3항은 지하연구시설의 건설·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의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로드맵(2024.2.21.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총 5,138억원(기술개발투자비, 사업부지·진입로·부대시설 비용 미포함)으로 추산한 바 있음
9	안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안 제34조는 위원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제1항)과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독성저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제2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로드맵(2024.2.21.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2023~2060년의 기간 동안 총 1조 1,414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음
10	안 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	×	- 안 제35조는 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제1항),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안 제35조제2항 각호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제2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추후 부지선정 등 일정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을 증원할 계획
11	안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	- 안 제37조는 위원회가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7조제6항은 안 제37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에 따라 마련되는 지원사업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월성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저장시설(맥스터 2차) 건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동경주 지역주민대표 간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합의서(2022.1.11.)’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75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 제1조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17조)

-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17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및 의견수렴 비용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유사 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참조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추계함
 - 유사사례의 기본계획 수립 비용 평균을 참조하고 5년 주기 및 기존 유사사례와의 주기를 고려하여 2026년에 4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 유사사례인 제1차 및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기초자료 조사·분석, 기본계획(안) 수립, 전문가·지방자치단체·일반국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유사한 사례

유사 기본계획 수립 사례	실시연도	예산(백만원)
제1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5~2016	570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1	336
평 균		45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제정안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4억 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17조)	—	453	—	—	—	453	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공론화위원회 운영(안 제18조)

-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18조에 따른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공론화위원회 운영 비용은 공론화위원회 회의 참석비 및 공론조사 비용으로 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출 유사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공론화위원회 운영 비용을 추계함
 - 유사사례의 기본계획 수립 비용 평균을 참조하고 추계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추계 첫해인 2025년 한 차례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5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 － 공론화위원회 유사사례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2013.10월~2015.6월)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2019.5월~2021.4월)가 있음

[표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유사한 사례

구 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기간	▶ '13.10 ~ '15.6 (20개월)	▶ '19.5 ~ '21.4 (23개월)
회의참석비	▶ 13억 7,400만원 - 위원 13명 × 38회	▶ 13억 5,800만원 - 위원 15명 × 43회 · 1-19차(19.5~20.2, 19회) · 20-43차(20.2.~21.2, 24회)
공론조사비	▶ 5억 1,900만원 - 모집조사(2,321명) 및 선정(175명), 토론회(1박2일, 최종 173명)	▶ 전국 의견수렴(시민참여형 조사) : 13억 9,900만원 - 모집조사(2만명) 및 선정(549명), 오리엔테이션, 숙의학습, 종합토론회(2박3일) 등 활동 ▶ 지역 의견수렴(시민참여형 조사) : 3억 9,700만원 - 모집조사(3천명) 및 선정(165명), 오리엔테이션, 숙의학습, 종합토론회(5일) 등 활동
소요비용 합계	18억 9,300만원	31억 5,400만원

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공론화위원회 사례의 경우, 위 비용 외에 위원장에게 회의주재수당으로 월 153만원(장관급 비상임위원장 직책수행경비 수준)이 지급된 바 있음
 자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제정안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25억 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4]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공론화위원회 운영 (안 제18조)	2,524	—	—	—	—	2,524	5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안 제20조)

-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20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비용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상의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계함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5643-301)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의 집행내역을 참조하고 추계기간 동안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은 추계 첫해인 2025년 한 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 제정안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5]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안 제20조)	200	—	—	—	—	20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신헌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헌태	02-6788-4653	heontshin@assembly.go.kr